

검 토 보 고 서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건 명 |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| |
| 의안번호 | 제4호 | 제 출 자 | 장진호 의원 외 3명 |
| 제 출 일 | 2023. 02. 13. | 회부연월일 | 2023. 02. 13. |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(안 제4조, 안 제12조, 안 제23조)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을 정함(안 제28조 제4항 제9호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개정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